

## 분양관리신탁 계약서 개정 대비표

개정 2021. 4. 22

개정전	개정후	비 고
<p>제32조(인감의 대조 및 책임) 수탁자는 수익자가 제출한 청구서류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기 신고된 인영(또는 서명)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여 확인하고, 신탁원본 또는 신탁수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, 변조,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32조(인감의 대조 및 책임) 수탁자는 수익자가 제출한 청구서류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기 신고된 인영(또는 서명)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여 확인하고, 신탁원본 또는 신탁수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, 변조,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u>다만, 수탁자가 인감이 위조·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■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 개별약관 시정요청 통보(2021.2.23)에 따른 (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) 개정</p>